# 운용지원 업무세칙

제 정 2006. 1. 10 개 정(1) 2006. 10. 26 개 정(2) 2014. 1. 13 개 정(3) 2017. 5. 15 개 정(4) 2018. 2. 26 개 정(5) 2020. 8. 14 개 정(6) 2021. 1. 1 개 정(7) 2022. 6. 9

### 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(이하 "위탁자산"이라 한다)의 운용에 필요한 운용지원 업무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수탁은행"이라 함은 위탁자산의 안전한 보관·관리,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2. "거래관리기관"이라 함은 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전통자산의 거래관리, 파생 상품관리, 담보관리 등을 위해 공사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.
-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,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.

제3조(역할) 운용지원담당부서는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투자운용담 당부서와는 독립된 사후관리조직으로서 거래체결에 따른 현물인수도 및 자금결 제, 회계처리 등을 담당한다.

### 제 2장 거래 및 담보관리

- 제4조(거래내용의 확인) ①직접투자 시, 모든 거래는 거래상대방과 거래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거래내용의 확인은 사후결제담당부서(운용지원담당부서)에서 거래실행부서(투자운용담당부서)와는 별도의 자료 입수 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거래내용 확인 시 아래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의 일치 여부를 거래실행부서에서 작성한 매매내역과 제1항에 의해 확보된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를 통해 상호 확인한다.
  - 1. 거래상대방
  - 2. 거래상품
  - 3. 거래가격
  - 4. 거래일
  - 5. 결제일 또는 만기일
  - 6. 이자수급조건
  - 7. 결제계좌 등
  - ③거래내용의 확인은 전산시스템을 우선으로 하고, 이외 우편, 팩스 등으로 할수 있다.
  - ④거래내용의 확인은 거래발생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래실행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운용지시) ① "운용지시"라 함은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은행에 자산의 취득·매각, 자금이체, 현물인수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함을 말한다.
  - ②운용지시는 전산시스템, 팩스 등 수탁은행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업무 담당자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거래내역 관리)** ①모든 거래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고 전산을 통해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거래 내역의 송수신 여부를 거래관리기관 및 수탁은행과 확인하여야 하며, 미송신, 미수신 및 불일치 사항 발견 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.
- 제7조(담보관리) ①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가치와 보유내역의 일별가치

- 를 평가하여야 한다.
- ②일별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의 지급 및 수취가 필요한 경우 내부 업무절차에 따라 담보를 주고 받는다.
- ③거래내역의 대사를 통하여 상호 정보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실제내역을 확인하고,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.

#### 제 3장 위탁자산의 결제 및 관리

- 제8조(위탁자산의 결제 및 실물자산의 관리) ①위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자금 및 증권의 결제는 거래상대방 및 수탁은행 등과 사전 협의된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 야 한다.
  - ②현금 및 보유수량 대조 혹은 전문 확인을 통하여 결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.
  - ③실물자산은 수탁은행에 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주기적으로 명세를 확인하다.
  - ④실물자산이 불가피하게 혹은 일시적으로 공사에 보관될 경우 두 명 이상의 담당자 입회하에 금고에 보관한다.

### 제 4장 의결권 및 권리 행사 처리

- 제9조(의결권 및 권리 행사에 따른 운용지원업무) ① 「위탁자산운용규정」및 동세칙에 따라 투자운용담당부서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내역을 통보받아 관련 시스템에 반영한다.
  - ②투자운용담당부서가 위탁자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변경된 보유수량을 시스템에 반영한다.

# 제5장 위탁자산의 대조 확인 및 불일치 처리

제10조(현금 및 증권 보유내역 대조) ①공사와 수탁은행의 현금 및 증권 보유수량

- 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대사한다.
- ②지급·수취 할 자금 및 유가증권의 실제 결제 여부를 확인한다.
-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서 불일치 발생 시에는 발견 즉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(이자 및 배당내역 관리)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포함한 배당, 이자 내역을 관리하고, 수탁은행과 대조한다.

#### 제 6장 위탁자산의 평가, 회계 및 보고

제12조(위탁자산 평가) 평가는 공사 「위탁자산 평가세칙」 및 동 지침에 의한다.

제13조(위탁자산 회계) 회계는 공사 「위탁자산 회계처리세칙」에 의한다.

제14조(위탁자산 보고) 위탁자산에 대한 보고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 의한다.

# 제 7장 기타

- 제15조(중권대여업무 관리) ①위탁기관이 위임한 증권대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용지원담당부서에서는 증권대여대행기관의 선정 및 관리, 차입기관 관리, 담보기준 관리, 증권대여 실적 보고 등 증권대여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  -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권대여업무 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「증권대여업무 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6조(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) ①투자운용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산 운용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지를 할 수 있다.
  - ②계좌의 개설 및 폐지 절차는 당국의 해당 법규 및 해당 수탁은행 절차에 따르며, 필요시 위탁기관의 서명을 득한다.
  - ③수탁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한다.

- 제17조(운용수수료 및 비용처리) ①위탁자산 운용관련 수수료 계산 및 비용처리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 의한다.
  - ②수수료 계산내역을 분기별로 위탁기관에게 보고하며, 위탁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수료 지급요청 공문을 발송한다.
  - ③위탁자산의 운용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비용은 관련계약 및 국제금융 관례에 따라 별도의 승인된 절차로 지급할 수 있다.
- 제18조(수탁은행 등의 선정) ①위탁자산의 안전한 보관·관리 및 회계, 거래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은행 및 거래관리기관 등을 둘 수 있다.
  - ②수탁은행 등의 선정은 재무안정성, 업무처리 능력,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 및 수탁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
  - ③선정위원회의 구성, 수탁은행 등의 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내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 - ④운용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회계, 평가 등과 관련하여 외부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다.
- 제19조(수탁은행 등의 관리)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수탁은행 및 거래관리기관 등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회의를 가지며 회의록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하다.
- 제20조(순자산가치 오류수정의 기준) 위탁자산 순자산가치(NAV)의 재계산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2조 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.

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6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5월 15일 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5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세칙은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6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(7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.